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문개정	1999. 1. 7	조례 제1114호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1978호
	개정 1999. 6. 29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14. 2. 27	조례 제1992호
	1999. 9. 10	조례 제1147호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
	2001. 7. 26	조례 제1255호	일부개정	2015. 4. 3	조례 제2074호
	2002. 2. 16	조례 제1272호	일부개정	2015. 5. 28	조례 제2086호
	2003. 2. 11	조례 제1297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3호
	2003. 10. 9	조례 제1316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5호
	(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		일부개정	2016. 3. 2	조례 제2164호
전문개정	2003. 11. 18	조례 제1323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3호
개정	2004. 1. 8	조례 제1332호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21호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1호
	2004. 6. 25	조례 제1344호	일부개정	2017. 7. 24	조례 제2270호
	2004. 9. 21	조례 제1358호	일부개정	2017. 11. 10	조례 제231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2018. 1. 31	조례 제2336호	
	2004. 11. 20	조례 제1359호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61호
	2005. 4. 21	조례 제1379호	전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
	2005. 7. 27	조례 제1396호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10호
	2005. 12. 22	조례 제142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 10. 20	조례 제1463호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91호
전문개정	2007. 3. 28	조례 제150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조례 제2699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6호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49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277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3호	
	2008. 9. 24	조례 제1608호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73호
	2008. 12. 9	조례 제1630호	일부개정	2022. 12. 26	조례 제2914호
	2009. 5. 29	조례 제1665호	일부개정	2023. 9. 25	조례 제2999호
전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전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16호
일부개정	2011. 3. 8	조례 제1759호	일부개정	2024. 11. 12	조례 제3164호
일부개정	2011. 9. 22	조례 제1798호	일부개정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일부개정	2011. 12. 26	조례 제181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862호	일부개정	2025. 10. 2	조례 제3289호
일부개정	2013. 2. 25	조례 제1907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3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9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

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 본청·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직속기관: 보건소
2. 사업소: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3. 하부 행정기관: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학운동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① 시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본청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3. 국회, 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
4. 정부, 경기도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아래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부시장 아래에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건설교통국, 경제문화국,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국을 둔다. <개정 2025. 10. 2>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정책개발, 정책과제, 조직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국도비 관리, 법무 및 의회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 하수과, 가로정비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교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 재난안전, 민방위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3. 도로 확충,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정책, 교통정보 운영, 교통시설 및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
5. 하수시설, 하수도 정비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질서(노점상, 적치물), 주정차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0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5. 10. 2>

② 경제문화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10. 2>

1. 일자리정책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창업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업 지원 및 기업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

원,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한 사항

3. 농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친환경무상급식, 축산행정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육성·지원, 관광정책, 국가유산 관리,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광명시민체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관리, 선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공무원 교육,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와 분권, 주민자치, 민관협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회계지출 및 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정,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토지관리, 부동산, 도로명 주소, 지적조사에 관한 사항

[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복지자원 관리, 통합조사 및 관리,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어르신·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아동복지, 출산정책, 외국인복지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4. 보육정책 및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육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3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건축행정, 건축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정원도시정책 수립, 정원조성, 공원정책 수립, 공원조성, 녹지 및 산림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토목공사 등 시장이 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신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① 신도시개발국에 신도시조성과, AI스마트도시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를 둔다. <개정 2025. 10. 2>

② 신도시개발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

1. 신도시 개발사업,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변경,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 데이터, 공간정보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안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5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를 둔다.

제16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에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

② 평생학습사업본부에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을 둔다.

③ 친환경사업본부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를 둔다.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소장을 두며, 본부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본부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평생학습사업본부

가. 평생학습정책, 학교지원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시행 및 총괄·조정, 평생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자료 관리 및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대출 등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사업본부

가.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 대기·수질 관리

나. 생활폐기물의 수거, 자원순환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공과금 및 제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라. 수돗물 공급 관로의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정수장·배수지·가압장의 보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차량행정·차량등록·자동차 관리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말소·이전·저당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 행정기관

제21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2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2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7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25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제26조(정원채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 7. 4 조례 제311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을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국”으로 한다.

②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③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철도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도시개발사업단장”을 “신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의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민원토지과”로 하고, “징수과, 노인복지과”를 “세정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

⑥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재난 업무 주관부서란의 “주택과, 건강생활과”를 “도시재생과, 건강위생과”로 하고, “도시교통과”를 “도시교통과/철도정책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의 “주택과”를 “주택과/건축과”로 하고, “건설지원사업소”를 “건설지원과”로 하며, “도시교통과”를 “도시교통과/철도정책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의 “주택과”를 “주택과/건축과”로 하고, “도시교통과”를 “도시교통과/철도정책과”로 한다.

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0. 2 조례 제3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②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재난 업무 주관부서란의 “기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5. 10. 2〉

시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제4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시 청	광명시청	광명시 시청로 20
직속기관	광명시 보건소	광명시 오리로 613
사 업 소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광명시 철망산로 2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광명시 범안로 777-21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광명시 오리로 701
하 부 행정기관	광명시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복로 51
	광명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 947
	광명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광명시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9-1
	광명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광명시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광명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새터로 13
	광명시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사성로 121
	광명시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시청로 102
	광명시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철산로 56
	광명시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도덕공원로 60
	광명시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오리로 747
	광명시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안현로 25
	광명시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금당로 28
	광명시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안현로 54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소하로 25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성채로 52
	광명시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양지로 17 (유플래닛 6층)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

[별표 2] 〈개정 2025. 10. 2〉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공공용 청사	광명도서관	광명시 원광명안로 48
	철산도서관	광명시 철산로 56
	하안도서관	광명시 철망산로 46
	소하도서관	광명시 소하일로 7
	평생학습원	광명시 철망산로 2
	충현도서관	광명시 충현로42번길 19
	연서도서관	광명시 연서일로 10
	열린시민청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도시통합운영센터	광명시 디지털로 34-1
	메모리얼파크	광명시 자경로 153
	시민회관	광명시 시청로 20
	인생플러스센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체육관	광명시 오리로 703
	여성비전센터	광명시 오리로366번길 6
	노인요양센터	광명시 오리로 613
	환경사업소	광명시 부광로 387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시 오리로 703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광명시 오리로 1018 3층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광명시 소하로 196 2층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광명시 시청로 102
배수펌프장	광명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106
	광명1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185
	광명2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211
	광명3배수펌프장	광명시 목감로 271
	철산배수펌프장	광명시 안양천로 495
	하안배수펌프장	광명시 안양천로 207
	소하배수펌프장	광명시 하안로 30-19
배수지	하안배수지	광명시 가림로 59
정수장	노온정수장	광명시 범안로 777-21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00%	1.1% 이내	6.8% 이내	23.9% 이내	33.5% 이내	24.8% 이내	9.7% 이상	0.2% 이하

2. 연구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 공통: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24. 11. 1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276	1,27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68	1,268				
3급	1	1				
4급	11	7	1	1	2	
5급	76	39	2	6	10	19
6급 이하	1,178	1,178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6	6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5	5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